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18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정진욱 · 강준현 · 박해철
정일영 · 민형배 · 박지원
이재관 · 이주희 · 박용갑
최혁진 · 조인철 · 양부남
안도걸 · 전진숙 · 이개호
정준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 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초기창업기업에”를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3.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제38조제1항 중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를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

자조합의 출자금액(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합을 말한다]의”로, “제6호”를 “제4호의2, 제6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① 벤처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제1호의 업무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5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51조제3항 중 “벤처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의2를 제70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모태조합의 운용 현황
3. 모태조합의 운용 성과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료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77조 중 “벤처투자조합”을 각각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벤처투자조합”을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

투자조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u> <u>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u> <u>무의 집행을 위하여 벤처투자</u> <u>회사가 설립한 회사를 말한</u> <u>다.</u>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u>초기창업기업에</u>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 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 문에 따른 투자 의무를 적용하 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 ----- ----- ----- <u>다</u> <u>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u> ----- -----. ----- ----- ----- ----- ----- -----

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
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
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
업기업

3.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에 후속 투자하
는 경우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

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의 출자금액(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조
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합을 말한다]의-----

-----제4호의2, 제6
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① 벤처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조합운용전

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
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
자한 회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
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
조합운용전문회사는 설립 후에
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하
나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벤처투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
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
무를 할 수 없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의 집행

2. 제1호의 업무에 딸린 사업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 7. (생략)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8.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

-----.

-----.

1. ·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벤처투자회사</u>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 ⑦ (생략)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 ③ (생략)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포함한다)</u>-----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인 <u>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u> <u>제70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u>
--	--

	공시) ① <u>한국벤처투자는 모태 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u> 1. <u>매 회계연도의 결산서</u> 2. <u>모태조합의 운용 현황</u> 3. <u>모태조합의 운용 성과</u> 4. <u>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료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② <u>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u> (생략)	<u>제70조의3(투자조건부 융자 계약)</u> (현행 제70조의2와 같음)
<u>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u> (생략) ④ 「<u>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	<u>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u> (현행과 같음) ④ <u>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u>----- ----- ----- ----- ----- ----- -----

다.

1. ~ 3. (생략)

<신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
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
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
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
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
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
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
정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 벤처투자조합-----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
투자조합-----

없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u>벤처투자조합</u>,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 -----. 제80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투자조합</u><u>운용전문회사</u>, <u>벤처투자조합</u>----- ----- ----- ② (현행과 같음)
---	---